



목포시

Web Contents

2024년 04월 18일 22시 39분

출생신고

사망신고

혼인신고

이혼신고

개명신고

개명신고

■ 선행조건

가정(지방)법원의 개명허가결정이 있어야 함

■ 신고장소

시(구). 읍. 면사무소
(특별시청, 광역시청, 도청, 군청, 등 주민센터에서는 불가함)

■ 신고서 작성 시 유의사항

- ⑤번란 신고인 : 개명 후 성명 기록
- ⑥번란 제출인 : 제출인 성명 기록
- 신고인이 아닌 사람이 제출하는 경우에만 기록

■ 개명신고서에 첨부할 서류

- 개명허가결정등본 1부
- 송달증명원(허가결정일로부터 1개월 지난 경우)

 개명신고서 hwp다운로드

■ 과태료

- 개명허가결정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
- 기간 경과 시 과태료 부과

■ 온라인 개명신고

-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(efamily.scourt.go.kr)에서 신고서 입력
- 처리관서 : 개명자의 등록기준지 관할 가족관계등록관서

MokPo - Si
Web Contents

